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정관

1929. 2. 13	제정	1964. 4. 25	제정
1964. 11. 23	일부개정	1973. 12. 15	일부개정
1975. 10. 1	일부개정	1977. 12. 3	일부개정
1977. 12. 29	일부개정	1979. 1. 1	일부개정
1979. 10. 10	일부개정	1981. 4. 24	일부개정
1981. 10. 15	일부개정	1983. 1. 28	일부개정
1983. 7. 28	일부개정	1984. 2. 27	일부개정
1986. 11. 10	일부개정	1987. 6. 9	일부개정
1988. 2. 11	일부개정	1990. 2. 15	일부개정
1991. 9. 27	일부개정	1992. 6. 16	일부개정
1992. 9. 8	일부개정	1993. 8. 2	일부개정
1994. 12. 3	일부개정	1995. 10. 12	일부개정
1996. 3. 1	일부개정	1996. 6. 13	일부개정
1997. 5. 24	일부개정	1997. 6. 26	일부개정
1997. 11. 11	일부개정	1998. 6. 16	일부개정
1998. 12. 31	일부개정	1999. 11. 26	일부개정
2000. 2. 14	일부개정	2000. 7. 5	일부개정
2001. 6. 18	일부개정	2001. 11. 23	일부개정
2002. 3. 29	일부개정	2002. 6. 14	일부개정
2003. 6. 26	일부개정	2003. 11. 10	일부개정
2004. 4. 16	일부개정	2005. 2. 4	일부개정
2005. 5. 24	일부개정	2005. 8. 16	일부개정
2005. 11. 22	일부개정	2006. 3. 21	일부개정
2007. 7. 6	일부개정	2008. 3. 25	일부개정
2008. 4. 7	일부개정	2009. 7. 15	일부개정
2009. 9. 24	일부개정	2010. 1. 19	일부개정
2010. 12. 7	일부개정	2012. 5. 24	일부개정
2012. 8. 21	일부개정	2012. 10. 5	일부개정
2012. 11. 7	일부개정	2013. 2. 14	일부개정
2013. 5. 21	일부개정	2013. 8. 23	일부개정
2013. 11. 22	일부개정	2014. 5. 23	일부개정
2015. 2. 11	전부개정	2015. 5. 26	일부개정
2015. 11. 19	일부개정	2016. 2. 4	일부개정
2016. 5. 12	일부개정	2017. 2. 9	일부개정
2017. 5. 11	일부개정	2017. 8. 24	일부개정
2017. 12. 29	일부개정	2018. 2. 8	일부개정
2018. 11. 15	일부개정	2019. 2. 12	일부개정
2019. 5. 2	일부개정	2019. 11. 21	일부개정
2020. 2. 13	일부개정	2020. 5. 14	일부개정
2020. 8. 27	일부개정	2021. 2. 18	일부개정
2021. 5. 13	일부개정	2021. 8. 26	일부개정
2022. 2. 10	일부개정	2022. 5. 12	일부개정
2022. 11. 23	일부개정	2023. 2. 9	일부개정
2023. 8. 24	일부개정		

<법인 본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을 토대로 인류사회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학교를 설치·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등) ① 이 법인은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에 둔다.

② 이 법인은 제1항의 주된 사무소 외의 필요한 곳에 교육조직, 부속기관, 기타기관 등을 둘 수 있다.

제4조(설치·경영 학교) ①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고등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려대학교
2. 고려사이버대학교

②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중등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고등학교
2. 중앙중학교
3.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4.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제5조(규범의 종류) ① 이 정관이 위임하거나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규칙(효력단계의 순으로 정관세칙, 규정, 내규, 지침)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 정관이 위임하거나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을 학교규칙(효력단계의 순으로 학칙, 규정, 시행세칙, 내규, 지침)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학교규칙의 확정·공포에 관한 권한은 학교의 장에게 있다.

④ 이 정관에 위반하는 학교규칙은 효력이 없다.

제6조(정관의 개정) ① 이 법인의 정관은 이사정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로 개정한다.

② 정관 개정이 완료되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보고 등의 절차를 수행한다.

제2장 법인의 운영

제1절 자산, 수익사업, 회계

제1관 자 산

제7조(자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5조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③ 기본재산이 아닌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8조(재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하거나 혹은 용도변경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기본재산에서 산출되는 과실
2. 수익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
3. 그 밖의 수입

제2관 수익사업

제10조(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부동산업
2. 농림 및 축산업
3. 금융업
4. 의료업
5. 출판업
6. 의약품 및 의료기자재판매업
7. 식품제조업

8. 용역업
9. 소매업
10. 장례식장업
11. 운동설비운영업
12. 주차장 등 운영업
13. 광고업
14. 통신판매업
15. 원격평생교육제공업
16.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 사업
17. 교육서비스업
18. 그밖에 제1호부터 제17호에 관련된 일체의 부대사업

제11조(수익사업체와 그 주소) 이 법인이 경영하는 수익사업체와 그 주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려안암빌딩: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촌로 24길 58-5
2. 고려구로1빌딩: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26
3. 고려구로2빌딩: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18
4. 고려가리봉빌딩: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26
5. 고려인촌로1빌딩: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촌로 113
6. 고려인촌로2빌딩: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촌로 76
7. 고려정릉빌딩: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165
8. 계동빌딩: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04
9. 안암매점: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촌로 73
10. 구로매점: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 148
11. 안산매점: 경기도 안산시 적금로 123
12. 안암장례식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촌로 73
13. 구로장례식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 148
14. 안산장례식장: 경기도 안산시 적금로 123
15. 식품사업부 참기름공장: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틀못이길 76
16. 여주고려빌딩: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47
17. 디디엠씨: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75
18. 고려중앙학원 청량리빌딩: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홍릉로 20
19. 고려중앙학원 청담대성빌딩: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752

제12조(운영위원회 및 관리인) ① 이 법인이 경영하는 수익사업을 위하여 관리인을 두고, 필요에 따라 사업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이 정하는 관리인의 임용·복무·보수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제3관 회 계

제13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법인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에 속하는 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고 이사장이 집행한다.

③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하고 해당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제14조(예산 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서 정한 사항 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5조(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적립한다.

제16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2절 기 관

제1관 임 원

제1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12인(이사장 1인 포함)
2. 감사: 3인

② 제1항의 임원 중 법령에 의한 개방이사의 수는 3인으로 한다.

제18조(개방이사의 자격) 이 법인의 개방이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을 것
2. 이 법인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3. 「사립학교법」 등 법령이 정하는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제19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 4년

2. 감사: 3년(1회에 한하여 중임 가능)

②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으로서 이사가 된 사람의 임기는 그 학교의 장으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0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임원의 성명, 연령,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은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이사회 이사정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사립학교법」 등 법령 및 이 정관에 위반되는 사항이 발생한 때

2. 이 법인의 설립목적 및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건학이념 구현에 지장을 초래한 때

3. 이 법인 및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

④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한다.

⑤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며, 늦어도 임기 개시 1개월 전까지 관할관청에 취임 승인을 신청한다.

제21조(개방이사의 추천) ① 이 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개월 전) 이내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개방이사의 추천을 요청하며,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2배수로 추천한다.

②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정수는 9인으로 하며,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에서 추천하는 사람: 4인

2.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인

3.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인

③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이 법인으로부터 개방이사 추천 요청을 받으면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각 학교의 대학평의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골고루 반영하여 30일 이내에 대상 인원을 추천한다. 이 기간 내에 추천을 하지 않으면 법인은 관할관청에 추천을 요청한다.

⑤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고려대학교 대학평의원회에 둔다.

⑥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 개방이사의 추천 절차와 방법 등 세부사항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22조(추천감사의 선임) ① 감사 중 1인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단수로 추천한 사람을 선임하며, 이를 추천감사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추천감사의 선임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제23조(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 이사회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가 정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이사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④ 감사는 다른 감사 또는 이사와의 관계에서 민법 제777조가 정하는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관할관청으로부터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3. 관할관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6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⑥ 제5항 각 호가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사람은 임원이 될 수는 있으나, 그 사람을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24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임기 등) ①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제25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이사장을 보좌하고 법인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의결로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제26조(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① 이사장 유고시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결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진행한다.

제27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을 발견한 경우 이를 이사회와 관할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와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8조(임원의 겸직과 금지) ① 이사는 감사,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으로서 이사인 사람은 예외로 한다.

② 감사는 이사장, 이사, 이 법인의 직원,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29조(고문 등) ① 법인에 고문과 상담역을 둘 수 있으며, 이사장은 임원의 의견을 들어 상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고문과 상담역은 이사장의 요청에 따라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관 이사회

제30조(이사회와 그 구성 및 기능 등)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다만, 고등교육기관의 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장에게 위임함)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그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이사회와 원활한 진행과 기능 강화를 위하여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1조(이사회와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② 이사회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2조(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① 이사회는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해당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1년 동안 공개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법령이 정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 여부 및 공개범위 등을 의결한다.

제33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이 자신에 관한 사항인 경우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인 경우

제34조(이사회회의 소집: 일반)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회의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 통지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5조(이사회회의 소집: 특칙)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 소집통지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7조 제4호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하여 7일 이상 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절 해산

제36조(해산의 절차) ① 이 법인에 해산사유가 발생하여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조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여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은 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국가에 헌납하거나 또는 이 법인의 취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교육사업을 운영하는 단체에 기부한다. 다만, 그 귀속시기는 관할관청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로 한다.

제38조(청산인) 이 법인 해산의 경우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제3장 교원·직원의 인사

제1절 교원

제1관 임용

제39조(학교의 장의 임용) ①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고등교육기관의 경우 총장, 중등교육기관의 경우 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② 학교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중등교육기관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을 임용한 때에는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보고한다.

제40조(고등교육기관 교원의 임용) ① 고등교육기관의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교의 장이 임용하고 지체 없이 이사회에 보고한다.

② 고등교육기관의 교원의 임용기간, 재임용, 직위, 호봉, 정년보장임용 등 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학교의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39조 제3항은 고등교육기관의 교원의 임용에 준용한다.

제41조(중등교육기관 교원의 임용) ① 중등교육기관의 교원은 해당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②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이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할 경우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교사로 임용할 수 있으며, 임용된 교사는 관계법령에 따라 원로교사로 우대한다.

③ 중등교육기관 교원의 신규채용은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전형에 의한다.

④ 중등교육기관 교원의 신규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인규칙 또는 학교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 ⑤ 중등교육기관 교원 신규채용 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전형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채용자가 확정된 후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정보를 공개한다.
- ⑥ 제39조 제3항은 중등교육기관의 교원의 임용에 준용한다.

제42조(고려대학교 보직교원의 임용) ① 고려대학교의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 처장 등의 교무위원과 의료원장·병원장의 보직은 총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보한다.

- ② 제1항의 보직자의 임기는 2년(다만, 처장의 보직에는 임기를 설정하지 않음)으로 하며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의무부총장, 대학원장, 학장 및 의료원장의 임기는 그 특성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4년으로 할 수 있다.

제43조(고려사이버대학교 보직교원의 임용) ① 고려사이버대학교의 부총장, 처장, 학부장 등의 보직은 총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보한다.

- ② 제1항이 정하는 보직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44조(기간제교원) ① 교원의 직무이탈로 인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에는 그 기간 중 해당 교원자격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을 임용하는 경우 정원의 범위 안에서 임용권자는 그 권한을 해당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③ 기간제교원은 임용기간의 만료와 함께 당연히 퇴직한다.

제2관 신분보장

제45조(의사에 반한 부당처분 금지 등) ①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령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렇지 않다.

-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않는다.
- ③ 교원은 징계처분 또는 그밖에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교육부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사립학교의 교원은 현행범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학교장의 동의 없이 학교 안에서 체포되지 않는다.

제46조(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고, 제7호 및 제7-1호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が必要な 경우를 포함)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또는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된 때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7-1.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하는 경우
8.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11.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1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13. 그밖에 법령 또는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

제47조(휴직의 기간) ①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46조의 제1호에 의한 휴직: 1년 이내의 기간
2. 제46조 제2호 및 제4호에 의한 휴직: 복무기간
3. 제46조 제3호에 의한 휴직: 3개월
4. 제46조 제6호에 의한 휴직: 고용기간
5. 제46조 제7호에 의한 휴직: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해당 교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음)
- 5-1. 제46조 제7-1호에 의한 휴직: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
6. 제46조 제8호에 의한 휴직: 3년 이내

- 7. 제46조 제9호에 의한 휴직: 1년 이내(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8. 제46조 제11호에 의한 휴직: 전임의 기간
- 9. 제46조 제12호에 의한 휴직: 1년 이내(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함)
- ② 제46조 제5호, 제10호 및 제13호에 의한 휴직의 기간은 법인규칙 또는 학교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48조(휴직교원의 신분) ① 휴직 교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한다.
- ③ 제46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 ④ 임용권자는 제46조 제7호 및 제7-1호에 의한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그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제49조(휴직교원의 처우) ① 제46조 제1호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휴직기간 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한다.

- ② 제46조 제5호 및 제13호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인규칙 또는 학교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 ③ 제46조 제1호, 제5호 및 제13호 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50조(직위해제 및 해임)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
- 2.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교원 또는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교원
- 3.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

② 제1항에 의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했으나 후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교원에게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교원이 직위해제 처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6개월 경과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④ 임용권자는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교원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대기를 명한다.

- ⑤ 제4항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교원에 대하여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 ⑥ 제1항 제2호가 제1호 또는 제3호의 직위해제 사유와 경합할 때에는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직위해제 처분을 한다.
- ⑦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교원이 그 기간 동안 능력의 향상 또는 뇌우치는 빛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제51조(중대 사안에 관한 특례) ①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 교내 관련기관의 의견조회를 거쳐 해당 교원에 대하여 고소·고발·신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성추행, 성폭력, 공금횡령 등과 같이 혐의 사안이 중대할 것
- 2. 해당 행위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염려가 있을 것
- ② 피해자가 교원, 직원,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인 때에는 학교의 장은 피해자가 해당 교원에 대하여 국가기관에 직접 고소, 신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③ 제1항 각 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 학교의 장은 해당 교원의 사직원과 무관하게 징계 또는 징계 예비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국가기관의 조사, 수사 등이 개시된 때에는 징계 또는 징계 예비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제52조(정년) ① 고등교육기관 교원의 정년은 만 65세로 한다. 다만, 총장은 정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② 중등교육기관 교원의 정년은 만 62세로 한다.

제53조(보수) ① 교원의 보수는 자격, 경력, 직무의 난이도 및 책임의 정도를 고려하여 정한다.

② 교원의 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인규칙 또는 학교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54조(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다 하더라도 그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후임자 발령을 하지 않는다.

제55조(명예퇴직) ①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교원은 정년퇴직일 전에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퇴직할 수 있으며, 그 교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중·고등학교 교원은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규정을 준용하고, 대학교 교원은 법인규칙 또는 학교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 ③ 대학교 또는 중·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하는 기간 중 공적이 현저한 사람이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을 할 때에는 특별승진을 할 수 있다.

제3관 교원인사위원회

제56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제57조(교원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고려대학교의 교원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총장이 전임교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 그 임용동의에 관한 사항
2. 총장이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 처장, 그밖에 교무위원과 의료원장, 병원장을 보하고자 할 때에 그 보직동의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고려사이버대학교의 교원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총장이 전임교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 그 임용동의에 관한 사항
2. 우수교원 및 연구년 교원의 선정 및 추천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고려대학교 또는 고려사이버대학교의 교원인사위원회가 임용계약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임용동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한다.

1. 임용기간 동안의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 활동
2. 학생의 교수·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4. 그밖에 임용계약 갱신 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사항

④ 중·고등학교의 교원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세부사항은 법인규칙 또는 학교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1.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한다)의 임용에 관한 사항
2.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3.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교장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8조(교원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고려대학교의 교원인사위원회는 모든 부총장, 대학원장, 기획예산처장, 교무처장, 총무처장과 총장이 지명하는 4인의 교수로 구성한다.

② 고려사이버대학교의 교원인사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교원으로 구성한다.

③ 중·고등학교의 교원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해당 학교의 교감과, 교장이 임명하는 6인의 교원으로 구성한다.

④ 교원인사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 외의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중임할 수 있다.

제59조(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①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② 교원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 또는 학교규칙이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0조(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과 정족수) ① 교원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교원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1조(회의록 작성) ① 교원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해당 학교의 장에게 보고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기명·날인한다.

제62조(인사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① 교원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해당 학교의 소속 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2절 사무직원

제63조(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민법」이 정하는 제한능력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② 직원의 신규채용에 있어서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법인규칙 또는 학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 ③ 재직 중인 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64조(임용) ① 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승급, 근속승진, 대우직원의 선발, 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인규칙 또는 학교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65조(정원) 이 법인 및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별표: 직원정원]에 따른다.

제66조(복무)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법인규칙 또는 학교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7조(보수) ① 직원의 보수는 자격, 경력, 직무의 난이도 및 책임의 정도를 고려하여 정한다.

② 직원의 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인규칙 또는 학교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68조(신분보장) 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법인규칙 또는 학교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9조(징계) ① 직원의 징계를 위하여 직원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직원의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인규칙 또는 학교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0조(중대 사안에 관한 특례 준용) 제51조는 직원에 준용한다.

제71조(명예퇴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정년퇴직일 전에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퇴직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법인, 대학교 및 중·고등학교에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직원
2. 의료원 소속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 10년 이내인 직원

②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고등학교 직원은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규정을 준용하고, 법인, 대학교, 의료원 소속 직원은 법인규칙 또는 학교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③ 제55조 제3항은 직원에 준용한다.

제4장 직제·보직

제1절 법인

제72조(법인본부장)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법인본부장을 둔다.

② 법인본부장은 별정직으로 보한다.

제73조(법인사무국) ① 법인본부장 산하에 법인사무국을 둔다.

② 법인사무국 국장은 별정직으로 보한다.

③ 법인사무국에 법인운영팀, 사업팀, 재무회계팀을 두며, 각 팀에 팀장을 둔다.

제2절 고등교육기관

제74조(총장) 고등교육기관의 장으로 총장을 둔다.

제75조(부총장) 총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총장을 둘 수 있다.

제76조(학부, 대학, 대학원) ① 학부,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 각각 학부장, 학장 및 대학원장을 둔다.

② 제1항의 각 기관에 행정팀을 둔다.

제77조(사무조직) ① 고려대학교에 총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비서실, 기획예산처,

교무처, 학생처, 총무처, 관리처, 대외협력처, 디지털정보처, 연구처, 인재발굴처, 국제처, 감사실, 대학원혁신본부, 경영전략실 및 대학정책연구원을 둔다.

- ②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에 비서실, 기획처, 교학처, 사무처, 입학홍보처, 연구산학처 및 학생복지처를 둔다.
- ③ 고려대학교에 산학협력 증진을 위해 산학협력단을 두고 세종캠퍼스에 세종산학협력단을 두며, 중앙도서관과 분관으로 세종학술정보원 및 의학도서관을 둔다.
- ④ 고려사이버대학교에 총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기획홍보처, 교학처, 총무처 및 교육지원처를 둔다.
- ⑤ 고려사이버대학교에 산학협력 증진을 위해 산학협력단을 둔다.

제78조(의료원) ① 의료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원장을 두고, 의료원장은 의무부총장이 겸한다.

- ② 의료원에 행정부서로 감사팀, 의무기획처, 의학연구처, 사무국 및 의학지능정보본부를 둔다.
- ③ 의료원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무를 할 수 있다.

제79조(위임) ① 고려대학교의 직제와 보직에 관한 것으로 이 정관이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고려대학교 직제·보직 정관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② 고려사이버대학교의 직제와 보직에 관한 것으로 이 정관이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고려사이버대학교 직제·보직 정관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3절 중등교육기관

제80조(교장과 교감) 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 ②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 ③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 유고시에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1조(하부조직) 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교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학교별로 교육활동에 필요한 부서를 두며, 각 부의 장은 보직교사로 보하고, 보직교사는 해당 학교의 장이 임용한다.

②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서무와 회계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두고, 실장은 5급 또는 6급으로 보한다.

제82조(위임) 중등교육기관의 직제와 보직에 관한 것으로 이 정관이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법인규칙 또는 학교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5장 법정위원회

제1절 총 칙

제83조(정의) ‘법정위원회’란 국가법령에 따라 이 법인 또는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설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제84조(법정위원회의 종류) 이 법인 또는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한다.

1. 교원징계위원회
2. 대학평의원회
3. 학교운영위원회
4.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제2절 교원징계위원회

제85조(위원회의 기능) 교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원징계위원회를 설치한다.

제86조(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법인에 설치한다. 다만, 고등교육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에 교원징계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7인은 이 법인의 이사 또는 해당 학교의 교원 중에서, 그리고 2인은 외부위원으로 임명한다. 다만, 학생 수가 200명 미만인 학교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3인은 이 법인의 이사 또는 해당 학교의 교원 중에서, 그리고 2인은 외부위원으로 임명한다. 임용권자의 구분에 따라 중등교육기관의 경우에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원을 임명하고, 고등교육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어느 경우든 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교원징계위원회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이 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단, 중등교육기관은 외부위원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을 1명 포함한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 4.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④ 교원징계위원회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⑤ 교원징계위원회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5. 교원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제87조(위원회의 위원장)**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8조(위원회의 간사·서기)**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 ②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기관에 따라 법인 이사장 또는 학교의장이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 제89조(징계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
- 1. 「사립학교법」 등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제90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의 종류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한다. 단, 중등교육기관의 교원은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한다.
- ② 강등은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고, 강등 처분을 받은 교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전액

을 감한다.

-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교원은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 ⑤ 견책은 과오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제91조(제척)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92조(위원의 기피 등)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기피 또는 회피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또는 회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이나 회피를 신청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④ 교원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사전조사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이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기피되지 않는다.

제93조(제척·기피 등으로 인한 위원의 보충) 제척 또는 기피 등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일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한다.

제94조(징계의결의 요구와 통지) 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소속 교원 중에 제8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요구한다. 이때 진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사전조사를 한 후에 징계의결의 요구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징계의결의 요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다.

- 1. 징계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서류
- 2. 징계의 종류와 양을 기재한 서류
- 3. 징계사유서와 징계요구자의 의견서
- 4. 징계혐의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서류
- 5. 징계대상자의 이력서
- 6. 근무성적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7. 그밖에 징계의결에 참고할 수 있는 서류

- ③ 교원의 임용권자가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한다.
- ④ 고등교육기관의 경우 교원의 임용권자가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해당 내용을 법인이사장에게 통보한다.

제95조(징계의결 요구의 시효) ①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다만,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폭력·성매매·성희롱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기간 경과 이전에 임용권자가 징계의결의 요구를 한 때에는 그 시점부터 징계의결 요구의 시효가 중단된다.
-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96조(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해자·관계인·참고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③ 피해자·관계인·참고인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서면으로 조사하거나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할 수 있다.
- ④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제97조(징계의결과 징계처분)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②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용권자에게 통고한다.
- ③ 제2항의 징계의결서의 이유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적용 법령을 명시한다.
- ④ 임용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 이 경우에 임용권자가 법인인 때에는 징계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 ⑤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해당 교원에게 교부한다.

⑥ 고등교육기관의 경우 교원의 임용권자가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징계처분과 동시에 해당 내용을 법인이사장에게 통보한다.

제98조(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 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한다.

제99조(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0조(위임)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인규칙 또는 학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3절 대학평의위원회

제101조(대학평의위원회의 설치) 고등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려대학교와 고려사이버대학교에 대학평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제102조(평의위원회의 구성) ① 대학평의위원회는 교원·직원·조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교우 및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각 학교의 총장이 위촉하는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평의위원회의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려대학교: 14명(교원 5명, 직원 2명, 조교 1명, 학생 2명, 교우 2명,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사 2명)
2. 고려사이버대학교: 12명(교원 3명, 직원 2명, 조교 1명, 학생 1명, 교우 1명,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사 4명)

② 대학평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구성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3조(대학평의위원회 의장 등) ① 대학평의위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 중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의 임기와 같다.

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04조(평의원의 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05조(평의원회의 기능) 고려대학교와 고려사이버대학교의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는 자문에 한한다.

1. 학교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학교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학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6조(위임) 평의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교의 총장이 학교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4절 학교운영위원회

제107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중·고등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제108조(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을 한다.

제109조(위원의 선출 등)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다만,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2배수 내에서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위원의 선출 절차와 그밖에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인규칙 또는 학교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110조(위원의 임기 및 개시일)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111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112조(위원의 자격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의 자녀학생이 졸업 및 전학·퇴학한 때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4.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② 제1항 제4호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판단한다.

제113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한다.

⑥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14조(회의의 종류와 소집) ①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 시기는 법인규칙 또는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②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의안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연 6회 이상 개최하되 연 2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④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제115조(소위원회의 설치) 학교운영위원회는 안전심사의 효율화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6조(건의사항 처리) ① 위원장이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학교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② 건의사항 처리를 위한 절차 등은 법인규칙 또는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제117조(의안의 제출·발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할 의안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안은 학교장이 제출한다.

제118조(학교 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은 학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학교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19조(운영경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에 소요되는 교통비 및 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법인규칙(또는 학교규칙) 또는 교육청의 예산 관련 지침으로 정한다.

제120조(위임)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인규칙 또는 학교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절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제121조(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학교교육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중·고등학교에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제122조(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등) ①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는 중·고등학교에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교직원과 연관된 다음 각 호의 분쟁 사안에 대하여 심의·조정·권고를 한다.

1.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직원과 학부모 간에 발생한 분쟁
2. 학생안전사고에 대해 서울학교안전공제회 보상액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고 관련 교직원에게 추가 보상 등을 요구함으로써 발생한 분쟁
3. 그밖에 교직원의 예우 및 교권보호·존중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

②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에 관한 심의·조정·권고를 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다.

③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가 학생 안전사고 관련 분쟁사안에 관한 심의·조정·권고를 하기 위하여 경제적·법률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학교안전공제

회에 임·직원의 회의 참석, 고문변호사의 조언 등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3조(위원의 구성 등)** ①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②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해당 학교 학교운영위원회가 위원 중에서 추천하는 교원위원·학부모위원·지역위원 각 1인을 학교장이 위촉한다.
- ③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법률 또는 행정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1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의하여 위촉하는 위원은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 제124조(위원장)** ①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5조(위원의 의무)** ①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그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석하여야 한다.
- ③ 위원은 해당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안 된다.

제126조(분쟁조정신청) 분쟁에 관련된 교원 또는 학부모 당사자는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또는 학교장에게 서면이나 유선 또는 구두로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 제127조(회의개최 등)** ①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회의는 분쟁조정 신청이 있을 때에 개최한다.
- ②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위원장은 늦어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한다.
- ③ 회의의 소집통지는 위원장이 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하되, 개최일 3일 이전에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28조(위원의 제척)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분쟁의 당사자가 된 경우

에는 해당 사안에 대한 심의·조정·권고 절차에 위원의 자격으로 참여할 수 없다.

- 제129조(심의 등 결과의 처리)** ①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관련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한다.
- ② 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 등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 ③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는 심의 등의 결과, 보상해결이 필요하거나 해당 교원을 위한 소송대행 그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학교장으로 하여금 서울학교안전공제회에 이를 신청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④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사안 중 교원에 대한 협박·폭행·폭언 등으로 해당 교직원 또는 학교교육에 과중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관련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⑤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사안 중 학생에 대한 폭력 등 학생인권 침해의 정도가 범죄수준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해당 교직원에 대한 징계의결 등 인사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30조(간사)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이 지명하는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131조(준용)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자격상실, 그밖에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해서 이 절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32조(위임)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인 규칙 또는 학교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 제133조(청렴의무 및 행동강령)** ① 이 법인의 임직원 및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② 제1항에 따른 청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8조에 의한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한다.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 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이사: 김성수(金性洙), 박용희(朴容喜), 이중화(李重華),
현상윤(玄相允), 최두선(崔斗善), 김연수(金季洙),
장현식(張鉉植)
2. 감사: 김재수(金在洙), 조동식(趙東植)

부 칙 (1929. 2. 13)

「재단법인 중앙학원 정관」은 1929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1929. 2. 19
등기)

부 칙 (1964. 4. 2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6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법인 중앙학원과의 관계) 「사립학교법」의 제정·시행에 따라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재단법인 중앙학원’을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으로
변경한다.

부 칙 (1964. 11. 23)

이 정관은 196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문고대 1042. 3)

부 칙 (1973. 12. 15)

이 정관은 1973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대학 1042)

부 칙 (1975. 10. 1)

이 정관은 197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학 1040-1475)

부 칙 (1977. 12. 3)

이 정관은 1977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대학 1040-1806)

부 칙 (1977. 12. 29)

이 정관은 1977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대학 1040-1911)

부 칙 (1979. 1. 1)

이 정관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리 1040-7614)

부 칙 (1979. 10. 10)

이 정관은 1979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관리 1042. 3-9854)

부 칙 (1981. 4. 24)

이 정관은 1981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대학 1042. 3-423)

부 칙 (1981. 10. 15)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198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대학 1042. 3-1479)

제2조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대학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학교의 장은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학교의 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학교의 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대학교육기관의 보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사립학교법 및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교육기관의 부총장 등의 보직은 이 정관에 의하여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인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교육기관의 인사위원회 위원 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되어 근무하는 일반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 칙 (1983. 1. 28)

이 정관은 1983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92조, 105조 별표2 변경)(대학 1042. 3-141)

부 칙 (1983. 7. 28)

이 정관은 1983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2조, 36, 43, 52, 53, 92, 95, 96, 105조 별표2 변경)(대학 1042. 3-1601)

부 칙 (1984. 2. 27)

이 정관은 1984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10, 32, 44조 변경)(대학 1042. 3-246)

부 칙 (1986. 11. 10)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1986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9, 10, 13-21, 25, 27, 28, 34, 37, 38, 44, 34, 47, 49, 86, 91, 92, 93, 96, 105조 별표2 변경)(대학 25422-1483)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이사는 그 임기 만료 시까지 이 정관에 의하여 취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987. 6. 9)

이 정관은 1987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105조 별표1,2,3변경)(대학 25422-783)

부 칙 (1988. 2. 11)

이 정관은 1988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90, 92, 94, 95, 96, 105조 별표 2 변경)(대학 25422-137)

부 칙 (1990. 2. 15)

이 정관은 1990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92조 제7항, 제92조의 2 제6항, 별표 1 내지 별표4 변경)(대학 25422-165)

부 칙 (1991. 9. 2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1991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임명한 것으로 본다.

제3조(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교원징계위원회에 계류중인 징계청구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교육기관의 인사위원회 위원 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

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제5조(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 칙 (1992. 6. 16)

이 정관은 199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제54조, 92조 변경)(대학 25422-1065)

부 칙 (1992. 9. 8)

이 정관은 1992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89, 96, 105조 별표1 변경)(대학 25422-1646)

부 칙 (1993. 8. 2)

이 정관은 1993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36, 37, 38조 변경)(대학 81422-1540)

부 칙 (1994. 12. 3)

이 정관은 1994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제36, 37, 38, 89, 92, 105조 별표 2 변경)(대행 81422-2378)

부 칙 (1995. 10. 12)

이 정관은 1995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50조의 3, 105조 별표4 변경)(대행 81422-2363)

부 칙 (1996. 3. 1)

이 정관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3, 53, 54, 83, 90, 92, 92조의 2, 93, 96, 105조 별표2 변경)(대행 81422-403)

부 칙 (1996. 6. 13)

이 정관은 1996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105조 별표2 변경)(대행 81422-1241)

부 칙 (1997. 5. 24)

이 정관은 1997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50조의 3 제1항, 제53조 제1항, 제102조, 제104조 변경)(대학 81422-634)

부 칙 (1997. 6. 26)

이 정관은 1997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50조의 3 제3항 변경)(대학 81422-755)

부 칙 (1997. 11. 11)

이 정관은 1997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43조 제2항, 제92조 제8항 제9항 변경)(대학 81422-1330)

부 칙 (1998. 6. 16)

이 정관은 1998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제2호, 제7장 제3절, 제97조 제1항 및 제3항, 제98조 제1항, 제99조 1항, 제100조 변경)(대학 81422-580)

부 칙 (1998. 12. 31)

이 정관은 1998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50조의 3 제1항)(대학 81422-1934)

부 칙 (1999. 11. 26)

이 정관은 1999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2조 제1호, 제25조, 제27조 제3항, 제26조, 제37조, 제38조, 제43조 제3항, 제50조의 3 제1항, 제52조 제1항 제2호, 제53조 제2항, 제54조 제1항, 제89조, 제96조 제10항, 제96조 제14항, 제105조 별표2)(대학 81422-540)

부 칙 (2000. 2. 14)

이 정관은 2000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50조의 3 제2항, 제84조 제1항)(대행 81422-229)

부 칙 (2000. 7. 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8장 학교운영위원회 제9장 보칙)(대행81422-1108)

제2조(최초의 위원 임기개시 및 만료) 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제10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초회의 소집 일로부터 개시하며,

차기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 개시 일 전일에 만료한다.

제3조(학교운영위원회규정의 제정에 관한 특례) 이 정관시행 후 최초로 구성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은 당해 학교의 교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부 칙 (2001. 6. 18)

이 정관은 2001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3조 제2항, 제25조 제2항, 제43조의 2, 제50조의 3, 제53조 제1항 내지 제2항, 제54조 제1항, 제83조 제1항, 제84조 제1항, 제90조 제3항 내지 제4항, 제92조, 제92조의2 제5항 내지 제7항, 제93조 제1항, 제95조 제3항 내지 제4항, 제96조 제5항 내지 제6항, 제8항내지 제10항, 제14항 내지 제17항, 제97조 제3항 내지 제4항, 제98조, 제100조, 제9장 제120조 내지 제131조, 제10장 제132조 내지 제134조)(대재 81422-760)

부 칙 (2001. 11. 23)

이 정관은 2001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36조 제11항 및 제12항, 제37조 제10항, 제38조 제10항, 제43조의 2 제2항, 제92조 제8항 및 제10항)(대재 81422-1406)

부 칙 (2002. 3. 29)

이 정관은 2002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30조의 2 신설, 제43조 제3항, 제52조 제1항 제2호, 제90조 제4항 제3호, 제96조 제2항 변경)(대재 81422-464)

부 칙 (2002. 6. 14)

이 정관은 2002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92조 제5항, 제95조 제1항, 96조 제5항 변경, 제96조 제10항 삭제)(대재81422-826)

부 칙 (2003. 6. 26)

이 정관은 2003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44조 및 동조 제7호 변경, 동조 제9호 내지 제12호 신설, 제45조 제4호, 제6호 및 제7호 변경, 동조 제8호 및 제9호 신설, 제46조 제4항 신설, 제47조 제1항 내지 제3항 변경, 제53조 제1항 및 제4항 변경, 제89조 제2항 변경, 제92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5항 및 제6항, 제12항 및 제13항 변경, 제92조의 2 제7항 변경, 제102조 제1항 변경, 제

104조 제1항 변경, 제105조 별표2 변경)(대재81422-892)

부 칙 (2003. 11. 10)

이 정관은 2003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92조 제11항 변경, 제92조의2 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7항 내지 제9항 변경, 동조 제6항 신설, 제92조의3 제1항 내지 제2항 신설, 제94조 제2항 변경)(사학81422-1576)

부 칙 (2004. 4. 16)

이 정관은 2004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92조 제9항 변경, 제92조의2 제7항 및 제8항 변경, 제93조 제1항 변경, 제95조 제3항 변경, 제96조 제5항 내지 제6항 변경, 동조 제7항 신설, 동조 제8항 내지 제10항 및 제13항 내지 제14항 변경, 동조 제15항 신설, 동조 제16항 내지 제18항 변경)(사학지원과-851)

부 칙 (2005. 2. 4)

이 정관은 2005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14조 제1항 변경, 제92조 제8항 변경, 제105조 별표2 변경)(사학지원과-773)

부 칙 (2005. 5. 24)

이 정관은 2005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43조 제3항 변경, 제92조 제5항 변경, 제92조의2 제3항 변경, 동조 제7항 변경, 동조 제9항 신설, 동조 제10항 변경, 제105조 별표2 변경)(사학지원과-3401)

부 칙 (2005. 8. 16)

이 정관은 2005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제48조 제1항 변경, 제96조 제2항 변경)(사학지원과-5510)

부 칙 (2005. 11. 2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4조 제2항 변경, 제26조 제1항 변경, 제43조 제3항 단서 신설, 제89조 제1항 변경, 제92조 제6항 변경)(사립대학지원과-1517)

제2조(대학원장 및 학장 임기의 적용시기) 제43조 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일 이후 새로 임명되는 대학원장 및 학장의 경우에 적용한다.

부 칙 (2006. 3. 2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제2호 삭제, 제53조 제2항 삭제, 제54조 제1항 변경, 제90조 제4항 제3호 변경, 제95조 제1항 및 제3항 변경, 제96조 제1항 및 제6항 변경, 제7장 제3절(제97조 내지 제100조) 삭제, 제105조 변경, 제105조 별표2 변경, 별표3 삭제](사립대학지원과-1832)

제2조(고려대학교 병설보건대학에 대한 경과조치) 고려대학교 병설보건대학(이하 “보건대학”이라 한다)은 2011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보건대학 폐지 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교육관계 법령과 학칙을 적용하고, 수업·학사 및 학적부 등에 관하여는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에서 관리하도록 한다.

제3조(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보건대학의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 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고려대학교 또는 타 대학에 편·입학할 수 있다.

제4조(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보건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은 2006년 3월 1일부로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별표에 의한 해당 자격에 따라 고려대학교 교원으로 임용한다.

제5조(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보건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은 2006년 3월 1일부로 고려대학교 의료원 소속 직원으로 임용한다.

제6조(조교에 대한 경과조치) 보건대학의 조교와 보건대학이 계약한 모든 사항은 보건대학이 존속할 때까지 유효하며, 그 기간까지 조교로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 보건대학 학생들이 학사행정상 불편이 없도록 한다.

부 칙 (2007. 7. 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장 제3절(제13조 내지 제17조) 삭제, 제22조 제1항 변경 및 동조 제2항 신설, 제22조의2 신설, 제23조 제1항 제2호 변경, 제24조 제1항 후단 신설 및 동조 제2항 변경, 제24조의2 신설, 제24조의3 신설, 제25조 제2항 변경 및 동조 제6항 신설, 제26조 제3항 변경, 제32조 제1항 및 제2항 변경, 제32조의2 신설, 제35조 제2항 변경, 제43조의3 신설, 제52조 제3항 변경, 제66조의2 변경, 제92조의2 제3항 내지 제6항 변경, 동조 제9항 신설, 제96조 변경, 제10장(제132조 내지 제17조) 신설, 별표2 제2호 변경](사립대학지원과-3033)

제2조(감사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감사는 제23조 제1항 제2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감사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8. 3. 25)

이 정관은 2008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변경, 제6조 제2항 변경, 제25조 제4항 변경, 제26조 제3항 변경, 제32조의2 제1항 변경, 동조 제2항 신설, 제43조 제1항 변경, 동조 제5항 변경, 제44조 제7호 변경, 제45조 제6호 변경, 제52조 제3항 변경, 제53조 변경, 제58조 변경, 제102조 제1항 변경, 제104조 제1항 및 제2항 변경, 제107조 제1항 변경, 제136조 변경)(대학경영지원과-124)

부 칙 (2008. 4. 7)

이 정관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4조의2 제1항 및 제3항 변경)(대학경영지원과-337)

부 칙 (2009. 7. 15)

이 정관은 200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92조 제12항 변경, 제92조의2 제1항, 제2항 및 제8항 변경, 제95조 제1항 및 제3항 변경)

부 칙 (2009. 9. 24)

이 정관은 2009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92조 제1항, 제2항, 제6항 및 제16항 변경, 동조 제15항 신설, 별표2 변경)

부 칙 (2010. 1. 19)

이 정관은 2010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4조의3 제1항 변경, 제30조의2 제1항 및 제2항 변경, 제31조 제4항 신설, 제32조 제1항 및 제2항 변경, 제36조 제12호 신설, 동조 제13호 변경, 제37조 제2호 변경, 동조 제3호, 제5호 내지 제8호 신설, 제38조 제2호 변경, 동조 제3호, 제5호 내지 제8호 신설, 제39조 제1항 변경,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변경, 동조 제2항 및 제3항 변경, 제53조 제1항 변경, 제90조 제3항, 동조 제4항 제2호 변경)(사립대학지원과-411)

부 칙 (2010. 12. 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제3호 신설, 제36조 제13호 내지 제15호 신설, 동조 제16호 변경, 제43조 제2항, 제3, 제7항, 제8항 및 제9항 변경, 동조 제5항 및 제6항 신설, 제52조 제1항 및 제3항 변경, 동조 제2항 신설, 제53조 제3항 신설, 제54조 제1항 변경, 제7장 제4절 제101조 내지 제103조 신설, 제108조 변경, 제135조 변경, 제136조 제1항 변경, 제139조 변경, 제140조 변경, 별표4 신설)(사립대학지원과-7379)

제2조(합병의 효과) 학교법인 한국디지털대학교의 권리·의무는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이 포괄 승계한다.

제3조(교직원의 임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고려사이버대학교에 재임중인 교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4조(정년 및 퇴직)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중인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직원의 정년 및 퇴직에 관한 사항은 고려사이버대학교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2012. 5. 24)

이 정관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108조 별표5 변경)

부 칙 (2012. 8. 21)

이 정관은 2012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37조 제7호 및 제38조 제7호 삭제, 제37조 제9호 및 제38조 제9호 신설, 제89조 제1항 및 제2항 변경)

부 칙 (2012. 10. 5)

이 정관은 2012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제1항 변경 및 제2항 신설, 제53조 제1항 변경, 제90조 제3항 및 제4항 제1호, 제2호 변경, 제91조 제2항 변경, 제92조 제1항 내지 제9항, 동조 제13항 내지 15항 변경, 제96조 제5항, 제10항 내지 제12항, 제17항, 제18항, 제21항 및 제23항 변경)

부 칙 (2012. 11. 7)

이 정관은 2012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43조 제2항 및 5항 변경, 제50조 제3항 변경, 제5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 변경, 제59조 제3항 신설, 제65조 제3항 변경, 동조 제5항 신설 및 동조 제6항 변경, 제102조 제1항 내지 제3항 변경, 제103조 제2항 변경)

부 칙 (2013. 2. 14)

이 정관은 2013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43조 제5항 변경, 제43조의 2 제1항 변경, 별표2 변경)

부 칙 (2013. 5. 21)

이 정관은 2013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변경, 제5조 제2항 변경, 제43조의2 제1항 변경, 제44조 제7호 변경, 제50조 제3항 변경, 제66조의2 변경, 제92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6항, 제12항 변경, 동조 제5항 신설, 제92조의2 제3항, 제7항 변경, 제107조 제2항 변경, 제11조 제1항 변경)

부 칙 (2013. 8. 23)

이 정관은 2013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43조 제5항 변경)

부 칙 (2013. 11. 22)

이 정관은 2013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88조 제1항 변경, 제92조 제10항 변경, 제92조의2 제8항 변경, 제103조 제1항, 제2항 변경, 별표2 편경)

부 칙 (2014. 5. 2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4조의3 제1항, 제43조 제3항, 제92조 제11항 및 제13항, 제96조 제7항)

제2조(경과조치) 제43조 제3항 단서의 개정사항은 개정일 현재 재임 중인 보직자에게도 적용한다.

부 칙 (2015. 2. 11)

이 정관은 2015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5. 26)

이 정관은 2015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38조 제2항 삭제, 제77조 제1항, 제2항 변경, 동조 제3항, 제4항 신설, 제78조 제1항, 제2항 변경, 제95조 제1항 변경)

부 칙 (2015. 11. 19)

이 정관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 제16호 신설, 제36조 제1항 변경, 동조 제2항 신설, 제53조 제1항 변경, 제67조 제1항 변경, 동조 제2항 신설, 제76조 제2항 변경, 제77조 제1항 변경)

부 칙 (2016. 2. 4)

이 정관은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73조 제3항 변경, 제77조 제2항 변경, 별표 1 내지 5 변경)

부 칙 (2016. 5. 12)

이 정관은 201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72조 제2항 변경, 제73조 제2항 변경, 제77조 제3항 변경, 별표 1 변경)

부 칙 (2017. 2. 9)

이 정관은 2017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 제4호, 제15호 내지 제16호 변경, 동조 제17호 신설)

부 칙 (2017. 5. 11)

이 정관은 2017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77조 제1항 및 제4항 변경)

부 칙 (2017. 8. 24)

이 정관은 2017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46조 제7호 및 제13호 변경, 제46조 제7-1호 및 제12호 신설, 제47조 제1항 제5-1호 및 제9호 신설, 제47조 제2항 변경, 제48조 제4항 변경, 제49조 제2항 및 제3항 변경, 제77조 제1항 변경, 제77조 제5항 신설, 제78조 제3항 신설, [별표: 직원정원] 3.의료원 변경)

부 칙 (2017. 12. 29)

이 정관은 2017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46조 제1호 변경, 제86조 제2항 및 제3항 변경, 제86조 제4항 및 제5항 신설, 제95조 제1항 변경)

부 칙 (2018. 2. 8)

이 정관은 2018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77조 제4항 변경)

부 칙 (2018. 11. 15)

이 정관은 2018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78조 제2항 변경)

부 칙 (2019. 2. 12)

- (시행일) ① 제11조 제18호 개정사항은 2019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77조 제1항 개정사항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제77조 제4항 개정사항은 2019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5. 2)

- (시행일) ① 이 정관은 2019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77조 제1항 및 제3항 개정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1. 21)

이 정관은 2019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 제19호 신설, 제86조 제1항 및 제2항 변경, 제92조 제2항 신설, 동조 제3항 및 제4항 변경, 제93조 변경, 제94조 제4항 신설, 제97조 제6항 신설)

부 칙 (2020. 2. 13)

이 정관은 2020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90조 제2항 변경)

부 칙 (2020. 5. 14)

이 정관은 2020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 제17호 신설, 제41조 제2항 신설, 제78조 제2항 변경, [별표: 직원정원] 3.의료원 변경)

부 칙 (2020. 8. 27)

이 정관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7조 제1항 및 제2항 변경)

부 칙 (2021. 2. 18)

이 정관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7조 제1항 변경)

부 칙 (2021. 5. 13)

이 정관은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32조 제1항 변경, 제78조 제2항 변경)

부 칙 (2021. 8. 26)

(시행일) ① 이 정관은 2021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0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개정사항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2. 10)

(시행일) ① 이 정관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07조 및 제108조 개정사항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6조 개정사항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5. 12)

이 정관은 2022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별표: 직원정원] 3. 의료원 변경).

부 칙 (2022. 11. 23)

이 정관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77조 제2항 변경).

부 칙 (2023. 2. 9)

(시행일) ① 이 정관은 2023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77조 제1항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8. 24)

(시행일) ① 이 정관은 2023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47조 제1항 제5호 변경, 제78조 제2항 변경, 제6장 및 제133조 신설).

② 제76조 제2항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직원정원]

1. 법 인	
총 계	23명
별정직계	2명
일반직계	21명
2. 고려대학교	
총 계	665명
일반직계	269명
기술직계	396명
3. 의료원	
총 계	7,486명
일반직계	4,754명
의료직계	1,157명
기술직계	1,575명
4. 고려사이버대학교	
총 계	68명
일반직계	68명
5. 중·고등학교	
총 계	37명
일반직계	37명